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추가〉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9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추가	2
※ 참고자료	6
1.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6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0일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추가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u>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한강수계관리기금¹⁾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에 따라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²⁾

1) 한강수계법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한강수계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에 설치된 기금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음³⁾.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 친환경청정사업 등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⁴⁾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가뭄·홍수 등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수계법⁵⁾과

-
-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참고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 요율은 현재 톤당 170원임.

한강수계법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4) **한강수계법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2. 주민지원사업
 -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

달리 한강수계법에는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강수계에서 시행하는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에의 대응 및 다른 수계기금법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수계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법률명⁶⁾과 제정 목적⁷⁾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과 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9.(생략)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7. (생략)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7. (생략)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6) 4대 수계기금법의 제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7) **한강수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한강수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수용 곤란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41

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성 목적

-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 설치('99~)

※ (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입 현황

- '26년도 총수입은 5,375억원, 물이용부담금이 순수입(여유자금 회수 제외)의 94.9%로 수계기금의 주요 재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백만원)	639,207	620,357	570,717	562,556	537,529
물이용부담금	473,639	478,841	484,370	476,274	481,780
이자수입	1,189	2,353	4,116	1,401	2,412
기타*	22,501	23,714	21,530	27,186	23,337
여유자금 회수	141,878	115,449	60,701	57,695	30,000

* 토지대여료,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등

□ 지출 현황

- '26년 사업비 총지출은 5,375억원(주민지원 사업 872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269억원 등), 여유자금 운용 767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백만원)	639,207	620,357	570,717	562,556	537,529
사업비	소계	523,758	559,656	540,308	460,872
	주민지원사업	84,099	85,257	81,863	76,660
	환경기초시설	257,766	270,173	272,259	247,260
	기타수질개선	52,734	52,197	44,617	34,301
	토지매수 등	91,407	99,787	95,175	90,807
	오염총량관리	8,558	8,580	8,953	8,767
	친환경청정	19,970	34,044	28,273	20,654
	기금운영	9,224	9,618	9,168	8,738
여유자금 운용	115,449	60,701	30,409	75,369	76,65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